

# 5. 住宅建設基準等に 關한 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第1993-142호 1993. 4. 23

## 1. 개정이유

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('92. 12. 8. 법률 제4,530호)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('93. 2. 20. 대통령령 제13,851호)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('92.12.8. 법률 제4,530호)에 따라, 주택의 대량 생산·공급체제에 적합한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정함.

〈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항목〉

- 안전성능 : 구조안전성능, 방·내화성능, 피난·추락방지성능
- 거주성능 : 환기 및 기밀성능, 열환경성능, 음환경성능

- 내구성능 : 방수 및 배수성능, 방청 및 방부성능, 유지관리성능

〈공업화주택의 생산기준항목〉

- 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·품질관리시설기준
  - 경량조립식부재에 대한 생산설비·품질관리시설기준
- 나. 공업화주택의 인정신청서 및 인정서 등의 서식을 정함.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: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